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1750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1750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자 2019재나156 결정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2다3772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4. 13 선고 2011나4874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9. 28 선고 2011가소1553782 판결

전문

원고(재심피고), 피상고인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박시준, 기영조, 조현민

피고(재심원고), 상고인A

판결 선고2020. 6. 25.

환송판결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2다37725 판결

원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9재나15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N

이 유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소액사건이므로 같은 법 제3조에서 규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상고이유는 그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민유숙

대법관김재형

대법관이동원

주심대법관노태악